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46

발의연월일: 2022. 9. 21.

발 의 자:이달곤·백종헌·정찬민

김상훈 • 하영제 • 서범수

김영선 • 조경태 • 김예지

강기윤 • 박대수 • 김태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는 모든 산업 활동 및 생활환경에서 가장 필수적인 재화로서 한국전력에서도 공급하지 못하는 도서지역의 생활용, 어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를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한 면세유류 공급은 반드시 필 요함. 특히 도서지역은 해마다 생활용수 부족을 심각하게 겪고 있어 전력용 면세유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해수담수화 시설의 운용이 불가능해져 깨끗한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워지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자원고갈, 수입수산물 증가, 불법남 획 등에 따른 어업생산성 악화로 어가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서지방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

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를 "제1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로, "적용하고"를 각각 "적용하며"로, "적용하며"를 "적용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u>제1호</u>, 제4 -----제1호는 2025 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 만 적용하고-----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 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 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 -----적용하며----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 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 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 에만 적용한다.

1. ~ 22. (생 략)

③ ~ ⑤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